

서비스계약 제 _____ 호

본 (서명일자) 년 월 일자 서비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설립 및 법률적 구조) _____ 이고
납세번호 (법인등록번호) _____ 인 (고객 명칭)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설립 및
법률적 구조) _____ 이고 납세번호 (법인등록번호) _____ 인 (계약자 명칭) _____ (이하
"계약자"라 함) 간에 아래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다. 고객과 계약자를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

1. 계약의 주제

1.1. 계약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선적물품(서면 교신, 소포, 기타 문서상 및 비-문서상 콘텐츠)을 제 3 자(이하 수하인이라 한다)에게 인도하기 위한 물류솔루션 조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재량에 따라 해당서비스에는 제 3 자에 의한 국내 및/또는 국제적 인도의 조직과 이행, 창고에서의 선적물품 출고, 선적물품 보관, 통관형식과 절차, 인도 시 대금수령, 수령인에 대한 통지와 신원확인이 포함될 수 있다.

1.2. 서비스는 인도지시서 및/또는 서비스신청서가 발급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서비스는 본 계약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확인서/청구서가 제출된 날짜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1.4. 고객에 대한 계약자의 서비스제공 절차와 본 계약 이행상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cdek.kr 의 웹사이트 상에 현행본으로 게시되고 계약자사무소에서 및 옵션에 따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용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일반조건은 본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1.5. 본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은 일반조건 현행버전을 읽었고 그것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1.6. 고객은 계약자의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 관한 자료는 웹사이트 cdek.kr 과 계약자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자는 추가 범위의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소개 및 제안하거나, 유효한 종전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은 _____ 일 부로 발효하고 1 년간 그 효력이 있다. 본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이 만료하기 30 일 전에 본 계약상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장의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3. 계약 해지

당사자는 계약해지일자의 적어도 30 일 전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결제절차

4.1. 고객은 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할 의무가 있다.

4.2. 제공된 서비스의 인수는 서비스제공확인서에 의해 공식화되어야 하고, 그것은 당사자들이 서명하는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이하 확인서/인보이스라 함)여야 한다. 계약자는 두 부의 확인서/인보이스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객은 확인서/인보이스 수령 후 5 일 이내에 두 부의 확인서/인보이스에 서명해서 한 부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확인서/인보이스는 회계기간 중

계약자가 인수하는 모든 선적물품에 대해 발급되어야 한다. 수령인이 선적물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4.3. 본 계약상 회계기간은 월 (주)인 것으로 간주된다. 확인서/인보이스는 회계기간 말부터 3 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4.4. 비용과 대금은 선적물품의 물리적 및 용적 중량을 근거로 계약자 단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비용은 일반조건상 조항의 적용 하에 cdek.kr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고객을 위한 개별요금의 경우, 이는 계약 부록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선적물품이 고객이 발주한 서비스유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선적유형에 적합한 방식과 시기에 그 선적물품을 발송할 수 있고, 그 선적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유형에 대해 정해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4.5. 서비스대금은 확인서/인보이스 서명 후 3 일 이내에 고객이 은행송금을 통해 계약자 대금수령처에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4.6.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계약자에 대한 재정 의무이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먼저 위약금에 대한 고객의 재정 의무 이행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후 계약자가 제공한 특별송달서비스대금에 대한 고객의 재정 의무 이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입금된 대금을 대금청구문서에 기재된 지불목적과 상관없이 제공된 서비스/인보이스 중 먼저 청구된 일자의 확인서용으로 배정할 수 있다.

4.7. 고객이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의 이행에 관한 합리적 불만이 있는 경우, 고객은 그 불만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진술해야 하고 최종확인서/인보이스 수령 후 5 일 이내에 이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 클레임이 해결된 후에 확인서/인보이스에 서명해야 한다.

4.8. 고객이 계약자에 대한 클레임 제기 없이 위에 기재된 확인서/인보이스 수령 후 5 일 이내에 그 확인서/인보이스에 대한 서명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계약자는 고객이 그 확인서/인보이스 서명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조건에 따른 서비스제공 등 자신의 의무를 본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4.9. 전자통신(확인서/인보이스, 회계조정명세서, 요금표와 일반조건 개정통지서의 전달 포함)이 발송될 고객과 계약자의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

고객 공식대표자의 이메일

계약자 공식대표자의 이메일

5. 책임

5.1. 고객은 선적물품인도에 대한 수취인의 대금지불거절의 경우의 인도 시 대금지불 등, 계약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요금미지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5 조가 정한 기간 내의 서비스요금 미지불의 경우, 계약자는 각 지연일자 당 그 금액의 0.2%의 지연이자 지불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불기한을 10 일 이상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기존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고객의 선적물품을 억류할 수 있다.

5.2. 고객은 계약자의 공식근로자에게 한 잘못된 전화로 인한 특정선적물품의 픽업/인도서비스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3. 고객은 선적물품, 자신의 소비자특성, 계약자요금 등 관련자료에 관한 수취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4. 계약자는 제한적 한도의 책임만 있다. 계약자책임의 한도는 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5.5.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이나 부적절한 이행이 고객,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계약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5.6. 예상하지 않은 상황(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당사자는 본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이 정지된다.

6. 추가서비스

6.1 국가간 오더에 대한 허가증정보는 **고객/계약자가 수집한다/수집하지 않는다**.

6.2. 선적물품 반품서비스는 **제공된다/제공되지 않는다**. 반품조건은 일반조건이 규정한다.

6.2.1. 반품수령을 담당할 고객 공식대표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_____ (성명)_____

_____ (직책)_____

_____ (이메일)_____

7. 기타사항

7.1. 당사자들은 (그 제 3 자의 명칭, 은행내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7.2. 주소나 세부내용의 변동, 구조조정, 또는 청산의 경우, 해당당사자는 그 변동이 있을 때부터 10 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7.3. 본 계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 당사자들은 일반조건을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본 계약상 규정된 조항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7.4. 일반조건은 그 성격상 일반제안서로서 cdek.kr 의 계약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7.5. 본 계약서와 그 부록/첨부/약정은 서명 후 계약자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된 계약서/부록/별첨/약정, 회계 기타 문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서면요청 후 20 일 이내에 날인 및 친필서명이 된 문서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문서를 발송하기 위한 추가요금은 그 요청을 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7.6.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나 본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_____ 법원의 배타적 관할 하에 제기하기로 합의한다.

8. 당사자들의 주소, 은행명세 및 서명

계약자:	고객:
/	/